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465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성진, 오유진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성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9.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139049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제1항 기재 토지의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피고들은 E에게, 각 위 제1항 기재 토지 중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서울 강남구 F 대 193.9㎡ 중 각 3/20 지분에 대한 ‘2016. 2.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E에게 각 위 토지 중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 등

1) 합병 전 주식회사 G은 2015. 8. 20.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2억 원, 대출만기일 은행승인일로부터 1년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21.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을 2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갑 제3호증). 원고는 주식회사 G을 합병한 후 2016. 8. 18. 소외 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을 2017. 8. 21.로 연장하는 취지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 2) 소외 회사는 위 만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 3) 원고는 2017.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1. ‘소외 회사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964,228원 및 그 중 199,999,933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3. 1.까지는 연 13.58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은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8. 3. 15.경 확정되었다.
- 4)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위 대출원리금은 2020. 5. 21. 기준으로 263,318,405원 상당이다(갑 제2호증).

나. 서울 강남구 F 대 193.9㎡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 1) E은 1990. 5. 9. 서울 강남구 F 대 1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10 지분에 대해 ‘1988. 9. 2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이 사건 토지 중 각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2016. 2.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E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대해 피고들 앞으로 1/2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신분관계 등

- 1) 피고들은 E과 D의 아들들인데, 피고 B은 I생이고, 피고 C은 J생이다.
- 2) E과 D는 2018. 4.경 이혼하였으며 D가 피고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기하여 E에게 대출원리금 중 연대보증 한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 E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과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 이 사건 증여 당시 E은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과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 또는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하여 금전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무렵 E의 재산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인정된다.

	구분	내역		가액(원)	순번
		은행	계좌번호 또는 내역		
적극재산	예금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66,822	①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47	②
			(계좌번호 3 생략)	1,138	③
			(계좌번호 4 생략)	1,597,952	④
		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214,897	⑤
		N은행	(계좌번호 6 생략)	4,074	⑥
	부동산	이 사건 토지 지분		225,117,900	⑦

소극재산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P호		310,000,000	⑧
	합계			537,002,830	⑨
	보증채무금	원고 A	이 사건 대출금	200,000,000	⑩
		N은행	대출금	288,000,000	
		L은행	카드대출금	96,000,000	
			소매금융대출1	84,000,000	
			소매금융대출2	94,367,923	
	전세보증금	위 P호		230,000,000	⑪
	합계			992,367,923	⑫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무렵 E의 적극재산 가액은 537,002,830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은 992,367,923원 상당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당시 E이 소외 회사의 주식 42,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치가 1,051,428,000원(= 42,000주 × 1주당 25,034원) 상당인바,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주식 42,000주는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과 그 배우자였던 D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소외 회사의 경우 실질 경영자였던 E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운영되었다.

② 소외 회사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대출금채무 규모가 총 35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외상매입금은 약 23억 6,000만 원, 기타 미지급금은 약 6,000만 원으로 합계 약 24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갑 제11호증). 한편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121,816,312원,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139,446,486원인데, 2016년도 당기순이익에는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의 처분대금인 117,306,678원이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되어 있고, 그 처분대금의 규모는 당기순이익의 약 84%에 이르는바, 소외 회사 고유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처분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면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실제 약 2,2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갑 제12호증). 이후 소외 회사는 경영사정의 악화로 2017년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없어 현재 기업가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③ 소외 회사의 감사보고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2015. 12.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약 52억 4,000만 원)은 총자산(약 91억 7,000만 원)의 약 57%에 이르는 과도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고자산에 대하여 ‘한정의견’이 부여되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자본부실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2015. 12. 31. 기준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을 제6호증) 상의 1주당 주식가치 평가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식이 장외시장을 통하여 유통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현금화를 전제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E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3/10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등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사해의사 존부의 판단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2) E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사건 증여 무렵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과 위 표 순번 ⑧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외에 비교적 소액이 예금된 예금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여서, 위 아파트의 가액과 전세보증금의 차액 8,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제외하면 공동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합계 약 7억 6,000만 원¹⁾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 나이의 친아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바, E로서는 이러한 경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6. 9. 28. 이 사건 아파트 역시 매도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직후 그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증여로써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이자 피고들의 친권자 중 한명이었던 E 뿐만 아니라 다른 친권자인 D 역시 이 사건 증여로써 E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친권자들이 당시 선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 의무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제1항 기재 토지의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오기가 있어, ‘피고들은 E에게, 각 위 제1항 기재 토지 중 3/2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42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1) 소극재산 992,367,923원에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을 빼면 약 7억 6,000만 원 상당이 연대보증채무액이다.